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6. 23.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5. 19.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3. 5. 25.

다. 상정일자: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2023. 6. 1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가. 제안이유

거주자 우선주차장 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요금인상과 장애인 전용주차 구획 관련 조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다자녀 감면 대상 확대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요금에 대한 적용금지 사항 단서조항 신설 및 요금인상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고려한 부칙 신설 (안 제2조 및 부칙 제1조)
-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관련조항 신설(안 제4조의5)
- 제4조의5 조항 신설로 인한 조례상 약칭사항 정비(안 제5조)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상 다자녀 감면대상 확대 실시(안 별표1 제17호)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5조(노외 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제7조의2(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제14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제17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제25조(장애인전용주차 구획의 설치기준 등)

- 입법예고: 2023. 4. 13. ~ 5. 3. (제출된 의견 없음)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 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요금인상과 장애인 전용주차 구획 관련 조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다자녀 감면대상 확대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가. 주요내용

- (안 제2조 및 부칙 제1조)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요금에 대

한 적용금지 사항 단서조항 신설 및 요금인상에 대한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고려한 부칙 신설

- (안 제4조의5)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관련 조항 신설
- (안 제5조)제4조의 5조항 신설로 인한 조례상 약칭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임.
- (안 별표1 제17호)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상 다자녀 감면 대상 확대 실시하는 내용임.

나.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8호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다자녀 감면 대상을 확대 실시하고 관내 주차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요금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별표 1] 관계 법령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cc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2017. 10. 24., 2019. 12. 24.>
-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2019. 12. 24.>
-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9. 12. 24.>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7. 10. 24., 2019. 12. 24.>[전문개정 2010. 3. 2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6., 2021. 8. 27.>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또는 그 밖에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2. 주간선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리대나 그 밖에 도로의 부분으로서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沿道: 옆길)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종단경사도(자동차 진행방향의 기울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고, 그 차도의 너비가 13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

나.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로에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5.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및 같은 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②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10. 29.]